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부칙** <제32873호, 2022. 8.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제3조(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제21호·제23호·제2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해체·제거업자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1. 종전의 별표 28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2. 종전의 별표 28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마.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할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2.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II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과목
  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I 과목
  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공통필수 II 및 공통필수 III 과목
- ②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전기장비 제조업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기타 제품 제조업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출판업</p> <p>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p> <p>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p> <p>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p> <p>26. 발전업</p> <p>27. 운수 및 창고업</p>			
<p>28. 농업, 임업 및 어업</p> <p>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p> <p>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p> <p>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32. 도매 및 소매업</p> <p>33. 숙박 및 음식점업</p> <p>3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p>	<p>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7호의 사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4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p>	<p>1명 이상</p>	<p>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8호 및 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p>
<p>35. 방송업</p> <p>36. 우편 및 통신업</p> <p>37. 부동산업</p> <p>38. 임대업; 부동산 제외</p> <p>39. 연구개발업</p> <p>40. 사진처리업</p> <p>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p> <p>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p> <p>43. 보건업</p> <p>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p> <p>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46. 기타 개인 서비스업</p> <p>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p>	<p>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p>	<p>2명 이상</p>	<p>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p> <p>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p>			
<p>49. 건설업</p>	<p>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p>	<p>1명 이상</p>	<p>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p>
	<p>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p>		<p>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p>
	<p>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p>	<p>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p>	<p>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p>

	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b>건설안전기술사</b>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천 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 <b>산업안전지도사</b> 등”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공사금액 3천 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p>	<p>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에 해당하는 기 간은 3명 이상 으로 한다.</p>	<p>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 임하되, 같은 표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b>산업안전지 도사</b> 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공사금액 3,900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p>	<p>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에 해당하는 기 간은 3명 이상 으로 한다.</p>	<p>다만, 전체 공사기 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b>산업안전지도사</b> 등이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p>
<p>공사금액 4,900 억원 이상 6천 억원 미만</p>	<p>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4명 이상으 로 한다.</p>	<p>별표 4 제1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 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b>산업안전지 도사</b> 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 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에는 <b>산업안전지도사</b> 등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p>
<p>공사금액 6천 억원 이상 7,200 억원 미만</p>	<p>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4명 이상으 로 한다.</p>	<p>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 임하되, 같은 표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b>산업안전지 도사</b> 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공사금액 7,200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p>	<p>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5명 이상으</p>	<p>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 임하되, 같은 표 제12</p>

		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b>산업안전지도사</b> 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조 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b>산업안전지도사</b> 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사**
-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3)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산업안전·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m<sup>2</sup>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m<sup>2</sup>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m<sup>2</sup>

나. 강의실: 연면적 120m<sup>2</sup>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채광·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춘 것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총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산업 안전	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산업 보건	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보건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한다.
안전 검사	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나. 인력별 기준

구분	자격기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b>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b> 소지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

안전 분야	보건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b>기계·화공·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b> 1명 이상 나. <b>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b> 1명 이상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b>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b> 1명 이상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2. 시설기준

-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 가. 안전 분야: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 나. 보건 분야: 별표 17 제3호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건설 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b>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b>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사무실(장비실 포함)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만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조도계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p>○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p> <p>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p> <p>가) <b>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b></p> <p>나)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p> <p>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p> <p>가)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p> <p>나)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p> <p>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p>	사무실(장비실 포함)	<p>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만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스농도측정기</li> <li>2) 산소농도측정기</li> <li>3) 고압경보기</li> <li>4) 검전기</li> <li>5) 조도계</li> <li>6) 접지저항측정기</li> <li>7) 절연저항측정기</li> </ol>

- |   |  |  |
|---|--|--|
| <p>가)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p> <p>나)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p> <p>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p> |  |  |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인증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인증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전기안전으로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으로 한정함)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전자, 금속, 화공, 가스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산업안전(기술사는 건설·기계안전으로 한정함)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라.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곤돌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가. 크레인·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고소작업대·곤돌라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진동측정기 4) 경도계 5) 로드셀(5톤 이상) 6) 분동(0.5톤 이상) 7) 초음파두께측정기

		<p>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p> <p>다.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총 2명 이상)</p>	<p>8) 비파괴시험장비(UT, MT)</p> <p>9) 트랜시트</p> <p>10) 표면온도계</p> <p>11) 절연저항측정기</p> <p>12) 클램프미터</p> <p>13) 만능회로시험기</p> <p>14) 접지저항측정기</p> <p>15) 레이저거리측정기</p> <p>16) 수준기</p> <p>비고</p> <p>1. 1)부터 6)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p> <p>2. 7)부터 9)까지의 장비는 각 지부별로 보유</p> <p>3. 10)부터 16)까지의 장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p> <p>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p> <p>1) 초음파두께측정기</p> <p>2) 절연저항측정기</p> <p>3) 비파괴시험장비(UT, MT)</p>
2	<p>프레스·전단기·사출성형기·롤러기·절곡기</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p>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6명 이상)</p>	<p>가. 회전속도측정기</p> <p>나. 정지성능측정장치</p> <p>다. 진동측정기</p> <p>라. 경도계</p> <p>마. 비파괴시험장비(UT, MT)</p> <p>바. 표면온도계</p> <p>사. 소음측정기</p> <p>아. 절연저항측정기</p> <p>자. 클램프미터</p> <p>차. 만능회로시험기</p> <p>카. 접지저항측정기</p> <p>비고</p> <p>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p> <p>2. 바목 및 사목의 장비는 각 지부별로 보유</p> <p>3.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장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p>

3	압력용기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li> </ol>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년,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총 6명 이상)</p> <p>다.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총 2명 이상)</p>	<p>가. 수압시험기</p> <p>나. 기밀시험장비</p> <p>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p> <p>라. 표준압력계</p> <p>마. 안전밸브시험기구</p> <p>바. 산업용내시경</p> <p>사. 금속현미경</p> <p>아. 경도계</p> <p>자. 핀홀테스터기</p> <p>차. 초음파두께측정기</p> <p>카. 접지저항측정기</p> <p>타. 산소농도측정기</p> <p>파. 가스농도측정기</p> <p>하. 표면온도계</p> <p>거. 가스누설탐지기</p> <p>너. 절연저항측정기</p> <p>더. 만능회로시험기</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li> <li>2. 자목의 장비는 각 지부별 보유</li> <li>3. 차목부터 더목까지의 장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li> </ol>
4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의 자격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p> <p>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석사 이상의 학위는 5년, 학사학위는 7년, 전문학사 학위는 9년 이상인 사람</li> <li>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기사인 경우 5년) 이상인 사람</li> </ol>	<p>가. 시설기준: 실험실(220㎡ 이상)</p> <p>나. 장비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폭발시험설비</li> <li>2) 수압시험기</li> <li>3) 충격시험기</li> <li>4) 인유기능시험기</li> <li>4) 고속온도기록계</li> <li>5) 토크시험장비</li> <li>6) 열안전성시험장비</li> <li>7) 불꽃점화시험기</li> <li>8) 구속시험장비</li> <li>9) 살수시험기</li> <li>10) 분진시험기</li> <li>11) 트래킹시험기</li> <li>12) 내부압력시험기</li> <li>13) 오실로스코프</li> <li>14) 내광시험장비</li> <li>15) 정전기시험장비</li> </ol>

			<p>16) 내전압시험장비  17) 절연저항시험장비  18)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19) 밀봉시험장비  20) 동압력센서교정장비  21)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22) 휴대용압력계  23) 휴대용가스농도계  24) 램프홀더토크시험기  25) RLC측정기  26) 침수누설시험장비  27) 통기제한시험장비  28) 점점압력시험장비  29) 수분함유량측정기  30) 고무경도계(IRHD)</p>
5	가설기자재	<p>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b>기술사</b>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2) <b>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분야)</b></li> <li>3)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박사학위는 2년, 석사학위는 5년 이상인 사람</li> <li>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li> </ol>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실무경</li> </ol>	<p>가. 시설기준: 검정실(사무실 포함 200㎡이상)</p> <p>나. 장비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압축변형시험기</li> <li>2) 인장시험기</li> <li>3) 만능재료시험기</li> <li>4) 낙하시험기</li> <li>5) 초음파두께측정기</li> <li>6) 경도기</li> <li>7) 토크렌치</li> <li>8) 마이크로미터</li> <li>9) 버니어캘리퍼스</li> </ol>

	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  
· 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분야	자격 요건
일반안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2)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b>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분야로 한정한다)</b> 2) <b>기계안전기술사</b>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3) 일반기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전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b>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분야로 한정한다)</b> 2) <b>전기안전기술사</b>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3)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p>이상인 사람</p> <p>4)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화공 및 위험물 관리</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b>산업안전지도사</b>(화공 안전 분야로 한정한다)</p> <p>2) <b>화공안전기술사</b></p> <p>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p> <p>3) 화공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4) 화공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소방</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소방기술사</p> <p>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p> <p>2)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가스</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가스기술사</p> <p>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p> <p>2) 가스기능장 또는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3) 가스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산업위생 및 생물</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b>산업보건지도사</b></p> <p>2) <b>산업위생관리기술사</b></p> <p>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p> <p>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7**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 2019.05.02 규칙 제871호  
개정 2019.11.13 규칙 제893호  
개정 2020.04.06 규칙 제922호

## 제 3 장 인증위원회

**제16조(인증위원회의 설치)** 이사장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본부에 인증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업무처리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여부의 결정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여부의 결정
4. 그 밖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제16조제1호의 경우 14명 이내,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9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며,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9.11.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이사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사항은 본부 해당 실장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개정 2020.04.06>

1. 당연직 위원: 해당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업무 담당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내·외부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본부 해당 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동계·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자

나. 제20조에 따른 심사원 자격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기계·전기·화공·안전·보건분야의 기술사**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기계·전기·화공·안전·보건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

사. 안전보건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안전보건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자.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이사장은 인증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기간 중에 그 사실을 안 경우 또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하여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에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3>

④ 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대리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그 사유를 명시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제17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개정 2019.11.13>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내용요지
4. 의결내용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시 대상 사업장의 인증심사를 실시한 심사원, 대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6조제1호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록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또한 제1호에서 제3호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컨설팅, 증언·감정 및 법률 자문 등을 한 경우
- ② 심의·의결 대상 사업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13>
- ③ <삭제 2019.11.13>
- ④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분야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1.13>

## 제 4 장 심사원

**제20조(심사원 요건)** ①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제23조에 따른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에 심사팀의 보조자로 다음 이상의 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  
가. 건설업: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2회 이상(일 6시간 이상, 심사 참가일 누계 10일 이상)의 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  
나. 건설업외: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4회 이상(일 6시간 이상, 심사 참가일 누계 10일 이상)으로서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의 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
  2. 제1호의 자격을 갖추고 공단에 심사원으로 등록된 사람
- ② <삭제 2019.11.13>
-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 심사 또는 컨설팅 실적이 없는 사람이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총 1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3일 이상의 심사팀 보조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일선기관장은 선임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팀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원의 업무)** ①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심사 계획의 수립
  2. 심사 계획에 따른 심사 실시
  3. 심사 결과의 정리 및 심사결과서 등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지원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 ② 일선기관장은 외부 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와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와 컨설팅의 이행에 대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원 시험 실시)** ① 이사장은 심사원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시험실시 및 채점방법 등에 관하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심사원 시험을 위탁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심사원 시험 응시)** ① 심사원 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건설안전·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건설안전·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건설안전·안전·보건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안전·보건·건설안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기업에서 안전·보건·건설안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이사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시험 응시원서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응시원서 또는 자격요건 입증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출제 및 합격기준)** ① 심사원 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② 심사원 시험의 문제는 서술형 50%, 객관식 50% 정도의 비율로 출제토록하며 그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원 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시험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원증 발급절차)** ① 이사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원 시험 합격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본부 해당 실장은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사원 등록을 요청할 경우 심사팀의 보조자로 참가한 실적(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원 작성항목에 보조자를 명기)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원 자격을 구비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원 교육)** ① 제23조에 따른 심사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원 또는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2-0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12월 1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별책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분류체계 변경(1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은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2023년 1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해당 자격에  
한하여 종전 기준에 따른 학점을 부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8. 환경 / 안전관리

종분류	직무 번호	종 목	인정 학점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전문학사	학사
산업안전	01	전기안전기술사	45	안전공학, 전기	산업공학, 안전공학, 전기공학, 제어계측공학
		기계안전기술사	45	기계, 기계설계, 안전공학, 용접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안전공학
		화공안전기술사	45	안전공학, 화학공업	산업공학, 안전공학, 화학공학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45	기계, 건축, 안전공학, 전기, 토목, 화학공업	기계공학,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산업공학, 안전공학, 전기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45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45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45		
		인간공학기술사	45	안전공학	산업공학, 안전공학, 작업치료학
		인간공학기사	20 (30)		
		산업안전기사	20 (30)	안전공학, 기계, 기계설계	산업공학, 안전공학
		산업안전산업기사	16 (24)		
	방재기사	20	안전공학, 토목	안전공학, 토목공학	
	02	건설안전기술사	45	건축, 건축물관리, 안전공학	건축공학, 산업공학, 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설안전기사	20 (30)		
		건설안전산업기사	16 (24)		
	03	도로교통안전관리자	16 (24)	자동차정비	교통공학, 자동차공학
		삭도교통안전관리자	16 (24)	-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16 (24)	항공정비	항공정비공학
		철도교통안전관리자	16 (24)	-	기관공학
		항만교통안전관리자	16 (24)	조선	조선공학
		교통안전관리지(선박-폐지)	24	조선	조선공학
04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0 (12)	토목	교통공학, 토목공학	
위생	0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45	안전공학, 환경관리	안전공학, 환경공학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45		
		산업보건지도사(작업환경의학)	45		
		산업위생관리기사	20 (30)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6 (24)		